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98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허종식 · 유동수 · 박찬대
노종면 · 김교홍 · 이훈기
박 정 · 허성무 · 복기왕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이해관계인”을 “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u>이해관계인</u>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 ----- <u>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40명</u> ----- -----.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